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3414 관 련
----------	-------------

제안연월일 : 2026년 3월 4일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본 개정안은 시장이 우선지정일자리 사업을 시행계획 등에 반영하여 우선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려는 취지임. 그러나 서울시는 2025년10월20일 우선지정일자리로 고시된 모든 노인일자리 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으므로, 시장의 책무와 같은 포괄적 조항에 개정안을 신설하는 것은 실효성이 부족함.
- 또한 관련 규정은 제3조인 시장의 일반적 책무에 두기보다는, 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과 관련한 사항을 규율하는 제4조제2항에 반영하는 것이 조문 체계상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제4조제2항제7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포함하여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3조(시장의 책무)제3항 ‘시장은 선정된 우선지정일자리 관련 사업을 추진계획에 반영하는 등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함.
- 제4조(추진계획 수립 등)제2항제7호를 ‘그 밖에 우선지정일자리 등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수정함.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그 밖에 우선지정일자리 등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수정(제안)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 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u><신설></u></p>	<p>제2조(정의) ----- ----- -----.</p> <p>1. ~ 3. (현행과 같 음)</p> <p>4. <u>“우선지정일자리”</u> <u>란 「노인 일자리</u> <u>및 사회활동 지원에</u> <u>관한 법률」 제15조</u> <u>의2에 따라 보건복</u> <u>지부장관이 노인 일</u> <u>자리 및 사회활동</u> <u>지원사업에서 국민</u> <u>의 복지 증진을 위</u> <u>하여 우선 실시할</u> <u>필요가 있다고 인</u> <u>정·선정한 일자리를</u> <u>말한다.</u></p>	<p><u>(현행과 같음)</u></p> <p><u>(현행과 같음)</u></p> <p><u>(개정안과 같음)</u></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 ② (생략)</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 ② (현행과 같음)</p>	<p><u>(현행과 같음)</u></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 data-bbox="209 275 379 315"><신설></p> <p data-bbox="209 674 485 714">③·④ (생략)</p> <p data-bbox="172 808 555 848">제4조(추진계획 수립 등)</p> <p data-bbox="209 875 555 916">①·② 1.~ 6. (생략)</p> <p data-bbox="172 1043 555 1285">7.그 밖에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 data-bbox="619 275 979 651">③ 시장은 선정된 우선지정일자리 관련 사업을 추진계획에 반영하는 등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 data-bbox="619 674 979 786">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p> <p data-bbox="584 808 979 848">제4조(추진계획 수립 등)</p> <p data-bbox="619 875 847 916">①·② 1.~ 7.</p> <p data-bbox="619 943 858 983">(현행과 같음)</p>	<p data-bbox="1007 275 1198 315">③ 항 삭제</p> <p data-bbox="1023 674 1267 714">(현행과 같음)</p> <p data-bbox="1007 808 1430 848">제4조(추진계획 수립 등)</p> <p data-bbox="1038 875 1267 916">①·② 1.~ 6.</p> <p data-bbox="1023 943 1267 983">(현행과 같음)</p> <p data-bbox="1007 1043 1430 1352">7. 그 밖에 <u>우선지정일자리</u> 등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우선지정일자리”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우선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선정한 일자리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등) 제2항 제7호 중 “노인 일자리”를 “우선지정일자리 등 노인 일자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u><신 설></u></p>	<p><u>(현행과 같음)</u></p> <p><u>(현행과 같음)</u></p> <p>4. <u>“우선지정일자리”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우선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선정한 일자리를 말한다.</u></p>
<p>제4조(추진계획이 수립 등)①·②</p> <p>1.~ 6. (생략)</p> <p>7. 그 밖에 <u>노인 일자리</u> 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u>(현행과 같음)</u></p> <p><u>(현행과 같음)</u></p> <p>7. 그 밖에 <u>우선지정일자리 등 노인 일자리</u> 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